#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98

발의연월일: 2020. 9. 8.

발 의 자 : 아주지비아 영 · 윤미향

안호영 · 양이원영 · 홍성국

박성준 · 송옥주 · 박영순

조승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저성장과 환경문제의 심화 속에서 경제 활력 제고,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, 환경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.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국가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(이하 "공사")는 공사가 개발·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에서만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사업(이하 "신재생에너지사업")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이러한 사업입지 제한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공사가 개발 •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

이외의 시설·부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, 국가·지자체·민간과의 공동개발 활성 화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·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1항제5호의2가목).
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1항제5호의2나목).

법률 제 호

##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180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5의2.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
  - 가. 공사가 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·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
  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(「물관리기본법」 제3 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)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

## 부 칙

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180호 한국수자원공사법	법률 제17180호 한국수자원공사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9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	제9조(사업) ①
의 사업을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5의2.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	5의2.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
까지,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	부지 등을 활용한 「신에너지
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・관	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
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	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ㆍ재
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	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	<u>· 관리</u>
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	<u>가. 공사가 제1호·제2호·제</u>
따른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	<u>4호·제5호 및 제12호에</u>
설치 및 운영・관리	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
	발·관리하는 시설 또는
	부지 등
	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	소유의 물관리(「물관리기
	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
	물관리를 말한다) 관련 시
	설 또는 부지 등
6. ~ 12. (생 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